

농 촌 진 흥 청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역농업특성화사업(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) 예산목 편성
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철원군

내 용

철원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사업(품목)에 기술·교육·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“2013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(2013년 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사업)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“세출예산의 정책·단위·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·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·운영한다.”라고 하였으며

민간경상보조금(307-02)은 “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”,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은 “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”으로 규정하였다.

그런데도 철원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3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세부사업중 「2013년 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사업」을 세부사업 기능에 맞게 예산목을 편성하여야 했으나, 총사업비 180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편성하였으며, 민간경상보조금(307-02)으로 예산편성 집행하여야 하는 2개 내역사업(○

○○ 체험마을 교재 제작 15백만원 및 ○○○○컨설팅 15백만원) 30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편성·집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

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및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